

학생집단활동 안전관리 규정

(제정 2019. 10. 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주최하는 각종 교내·외 학생집단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인권침해행위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학본부, 단과대학, 학과, 학생자치기구 및 동아리 등이 주최하여 교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학생집단활동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본교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학생 임의적으로 진행되는 행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담당부서) 학생집단활동의 안전관리는 학생취업처 학생지원실이 담당한다. 다만, 단과대학 내 학생 또는 학생단체의 집단활동 안전관리는 해당 단과대학 행정지원실이 담당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집단활동”이란 학생을 10명 이상 소집하여 일정한 행위(오리엔테이션, 축제, 체육대회, 전시회, 답사 등 교내·외 행사)를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인권침해행위”란 집단활동 중 학생에게 신체적, 문자·언어적, 성적 가해행위(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포함)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되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신체적 가해행위: 폭력(구타)행위, 음주강요, 열차려(엎드려뺨쳐, 원산폭격, 앓았다 일어서기 등) 등을 가하는 행위
 - 나. 문자·언어적 가해행위: 욕설, 인신공격, 신체·외모적 비하 발언 등으로 모멸감을 느끼거나 정신적 피해의식을 느끼게 하는 행위
 - 다. 성적 가해행위: 문자·언어적 방법 또는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안전관리책임자”란 학생집단활동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제5조(안전관리 원칙) 대학본부 및 행사를 주최하는 단체는 안전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책임자 및 보고) ① 본교의 학생집단활동 시 사고예방과 대책을 총괄하기 위하여 학생취업처장을 현장총괄책임자로 한다.

② 효율적인 사고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학생집단활동을 주관하는 교직원을 안전관리책임자로 한다.

③ 안전관리책임자는 행사 5일전까지 행사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안전관리 담당부서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안전관리책임자는 이 규정 제8조에서 정한 사항의 확인, 점검 및 교육을 통하여 행사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안전관리책임자는 학생집단활동 중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예방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⑥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는 지체 없이 안전관리 담당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교육) 안전관리책임자는 학생집단활동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학생행사의 취지와 목적

2. 사고발생 시 긴급대처방안,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관리 사전교육
3. 인권침해(신체적, 문자·언어적, 성적 가해행위)행위 방지교육
4. 그 밖에 음주, 폭행 등 학생집단활동 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대한 예방교육

제8조(안전관리 범위 및 내용) ① 교내에서 진행되는 학생집단활동에 대해 사전에 점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집단활동에 대한 보험 가입
2. 참석 대상 학생들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 인권침해 예방교육 실시
3. 학생집단활동을 위한 무대, 장비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사고배상 책임 보험 가입
4. 그 밖에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교외에서 진행되는 학생집단활동에 대해 사전에 점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집단활동에 대한 보험 가입
2. 참석 대상 학생들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 인권침해 예방교육 실시
3. 학생집단활동을 위한 무대, 장비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사고배상 책임 보험 가입
4. 숙박시설(장소)에 관한 사항
 - 가. 숙박시설(장소)에 대한 최근 1년 이내 지자체 등의 안전점검 결과 확인(위생, 소방, 전기, 가스 등)
 - 나. 숙박시설 소재지 지자체에서 허가받은 숙박정원 준수 여부 확인
 - 다. 숙박시설에 대한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등 관련 보험 가입 여부 확인
5. 교통수단에 관한 사항
 - 가. 버스 등 이동수단 관련 보험증권 및 차량보유 현황표 확인
 - 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 확인
 - 다. 계약서상의 차량번호와 행사당일 배차된 차량의 차량번호 일치여부 확인
 - 라. 버스 차종 및 연식, 승차정원 확인
 - 마. 배차 차량의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확인
 - 바. 배차 운전자에 대한 음주 감지 측정
6. 사전 답사
 - 가. 보험가입 여부, 시설물 안전점검 여부 재확인
 - 나. 화재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 체계 확인
 - 다. 차량 접근성 및 진입로 확보 여부
7. 대학 측 주관 학생집단활동의 경우 교직원이 동행
8. 그 밖에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행사의 불허 및 취소) 학생집단활동 안전관리책임자는 학생집단활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학생집단활동의 개최를 불허할 수 있으며, 허가한 경우라 하더라도 학생집단활동 전 또는 학생집단활동 중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학업 및 학교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
2. 교육 목적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정당 및 사회단체와 관련된 경우
3.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4. 본교의 교육이념, 학칙 및 기타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제10조(사고대처 및 보고)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사고수습 및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담당부서에 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책임자는 사고수습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사고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관리 담당부서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 담당부서는 사고의 경중에 따라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부에 사고 발생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사고 및 인권침해 행위 처벌) ①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관리 책임자를 본교 규정에 따라 징계 제청할 수 있다.

② 이 규정 제4조제2항의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인권침해 행위(가해)자를 본교 규정에 따라 징계 제청할 수 있으며, 인권침해 피해자의 신고·상담·처리는 본교 인권센터에서 담당한다.

③ 안전사고 및 인권침해가 발생한 학생집단활동에 대하여는 향후 운영중지, 폐쇄, 행·재정적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2조(보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제 규정을 준용하며 그 외의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교내☐ 교외☐				단과대학 및 학과		()		
				학과 동아리		()		
경유	지도 교수		결재	담당	실장	학장	총장	
						전결		
행사 명칭					주관 단체			
행사 일시					행사 장소			
참가 인원		명	교수 () 명		학생 () 명	기타 () 명		
사용여부(○, X) (교내 행사 시)		마이크	앰프	노래	울동	조명설치	무대설치	
(해당 사항 V 체크)	안전 확인 사항	교내외 행사	행사관련 무대/장비 등	안점점검 여부		예 ☐ 아니오 ☐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예 ☐ 아니오 ☐		
	교외 행사	단체보험 가입 여부	예 ☐ 아니오 ☐		안전/음주/인권침해 관련 지도 여부		예 ☐ 아니오 ☐	
		숙박 시설 확인 여부	지자체안전점검 확인서 확인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확인		안전 매뉴얼 확인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교통수단 확인	대중교통	전세버스	선박	항공	기타	
			☐	☐	☐	☐	☐	
			구 분		시간		편명/차량번호	
			출 발		:			
				도 착		:		
		이동 버스 안전도 확인 여부	보험증권 및 차량보유 현황표 확인		종합보험 가입 여부		안전 매뉴얼 확인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응급사항 대처 확인(반드시 연락처 확보 후 이동)	인근 병원 명			인근 병원 연락처			
		비상연락보고: 안전관리 현장책임자(지도교수)→학과장→학장→학생취업처장(총괄책임자)→총장						
	작성 시 유의사항		1. 계획서는 행사 1주일 전에 단과대학 행정지원실에 제출 2. 안전관리책임자는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부 안전 매뉴얼을 숙지하고, 학생들에게 교육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신청인 (안전관리책임자)	소 속		직 책		연락처		성 명	
							(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행사 신고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며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행사 관련 접수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소속, 학번, 직책, 성명, 연락처 등 신청서 기재사항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 일로부터 3년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거부 시 신청사항이 취소될 수 있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 4 -

[별지 제1호 서식] - 총학생회, 중앙동아리연합회, 중앙동아리 용

학생집단활동(행사) 계획서

교내 ☐ 교외 ☐		총학생회		☐ ()			
		중앙동아리연합회		☐ ()			
		중앙동아리		☐ ()			
경 유	지도 교수	※ 중앙동아리는 지도교수 서명필수	결 재	담당	실장	처장	총장
						전결	
행사 명칭					주관 단체		
행사 일시					행사 장소		
참가 인원		명	교수 () 명		학생 () 명		기타 () 명
사용여부(○, X) (교내 행사 시)		마이크	앰프	노래	울동	조명설치	무대설치
안전 확인 사항 (해당 사항 V 체크)	교내외 행사	행사관련	안전점검 여부		예 ☐ 아니오 ☐		
		무대/장비 등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예 ☐ 아니오 ☐		
	교외 행사	단체보험 가입 여부	예 ☐ 아니오 ☐		안전/음주/인권침해 관련 지도 여부		예 ☐ 아니오 ☐
		숙박 시설 확인 여부	지자체안전점검 확인서 확인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확인		안전 매뉴얼 확인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교통수단 확인	대중교통	전세버스	선박	항공	기타
			☐	☐	☐	☐	☐
			구 분		시간		편명/차량번호
			출 발		:		
		이동 버스 안전도 확인 여부	보험증권 및 차량보유 현황표 확인		종합보험 가입 여부		안전 매뉴얼 확인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응급사항 대처 확인(반드시 연락처 확보 후 이동)	인근 병원 명			인근 병원 연락처	
		비상연락 보고: 안전관리 현장책임자(지도교수 또는 교직원)→학생취업처장(총괄책임자)→총장					
작 성 시 유의사항		1. 계획서는 행사 1주일 전에 학생지원실에 제출 2. 안전관리책임자는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부 안전 매뉴얼을 숙지하고, 학생들에게 교육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신청인 (안전관리책임자)		소 속	직 책	연락처		성 명	
						(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행사 신고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며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행사 관련 접수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소속, 학번, 직책, 성명, 연락처 등 신청서 기재사항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 일로부터 3년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거부 시 신청사항이 취소될 수 있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 제출서류: 행사일정표(자율서식), 참가자명단[별지 제2호 서식], 교외 단체행사 안전확보를 위한 점검표[별지 제3호 서식], 기타(숙박시설-소방안전점검필증, 영업배상책임보험가입증권, 지자체안전점검필증, 교통안전-차량보험가입증권) 각 1부

[별지 제2호 서식]

학생집단활동 행사 참가자 명단

연번	학번	성명	연번	학번	성명
1			31		
2			32		
3			33		
4			34		
5			35		
6			36		
7			37		
8			38		
9			39		
10			40		
11			41		
12			42		
13			43		
14			44		
15			45		
16			46		
17			47		
18			48		
19			49		
20			50		
21			51		
22			52		
23			53		
24			54		
25			55		
26			56		
27			57		
28			58		
29			59		
30			60		

[별지 제3호 서식]

교외 학생집단활동 행사 안전 확보를 위한 점검표

□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구분	항목	점검(교육) 사항	확인
차량 및 운전자	차량	차량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였습니까?	
	서류	정기검사필 관련 서류, 계약차량과 동일차량 여부(차량번호)를 확인하였습니까?	
	차량 상태 점검	재생 타이어 사용 여부를 확인하였습니까?(앞 타이어 재생활용은 불법)	
		모든 좌석의 안전벨트는 정상 작동합니까?	
		개문 가능한 창문 위치를 확인하였습니까?	
		소화기 비치 여부 및 위치를 확인하였습니까?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및 위치를 확인하였습니까?	
운전자	운전자	운전자 적격 심사여부는 확인하였습니까?	
	안전교육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하였습니까?	
비상대처	위급 상황	위급 상황을 대비하여 소화기, 비상망치 위치를 알려주었습니까?	
	구급약	구급약, 소화제, 두통약 등 비상약은 구비하였습니까?	
구급약	약품 비치	보호가 필요한 학생 상황은 파악하였습니까?	
	연락망	차량 운전자와 탑승 차량별 대표자 연락처를 메모하였습니까?	
연락망	연락망	유사사 본교, 보호자, 소방서(119), 경찰서(112)에 연락하도록 준비하였습니까?	

□ 숙박 점검에 관한 사항

단계	점검 사항	확인
사전 답사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행사 당일 수용인원이 적정 숙박 정원을 넘어서지는 않습니까?	
	유리창문의 안전 잠금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2층 이상의 경우 소방시설(완강기, 소화기, 소화전)이 정상 작동합니까?	
	지자체 안전점검 등을 받은 시설입니까? (위생, 소방, 전기, 가스 등 최근 1년 이내 지자체 또는 개별법령 안전 점검 결과)	
	학생들의 이동 통로나 비상구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까?	
	학생들에게 방송 등 안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도착 후	외부인이 숙소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되어 있습니까?	
	필요한 구급약품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

단계	점검 사항	확인
사전 답사	2층 이상의 경우 완강기가 배치되어 있으며 정상 작동합니까?	
	소화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까?	
	소방시설 완공 검사필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숙박 및 교육 시설의 소방안전 점검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도착 후	위급 사항 발생 시 비상연락망 체계를 갖추었습니까?	
	현장에서 (화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대피 방법을 안내하였습니까?	
	소화기 및 완강기의 위치 및 사용법을 학생들에게 안내하였습니까?	

위와 같이 점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

성명

(서명)

첨부: 확인근거 서류 각 1부.

[별지 제4호 서식]

학생집단활동 행사 사고발생 보고서

구	분	개인 ☐		단체 ☐	
단	과	대	학	학	과
학	년			학	번
성	명			연	락
주	소				
사	안	개	요	○ 사건 일시: ○ 사건 장소: ○ 사건 내용(6하 원칙):	
사	안	경	과	(일자별, 시간대별 기술)	
참	고	사	항	(정서행동발달사항, 성적, 성격, 가족관계, 교우관계, 주변 환경, 기타)	
조	치	사	항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보 고 자					
소	속				
직	책		성	명	(서명 또는 인)